

## 「특정금전신탁계약서」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	개정 2023년 10월 12일	개정일자 반영
<p>제29조(관할법원)</p> <p>이 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「민사소송법」에 정하는 관할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.</p>	<p>제29조(관할법원)</p> <p>①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경우 제소 당시 금융소비자 주소를,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	<p>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[시행 2023. 10. 12] [법률 제 19532호, 2023. 7. 11., 일부개정]</p>